

『부천대장 및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 결과 공개

□ 근 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4-9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평가결과 공개 등)

□ 평가결과 ※ 평가배점(6.0점) : 책임 4.0점, 분야 2.0점

면접순서	발표1	발표2	발표3	발표4	발표5	발표6	발표7	발표8	발표9
위원1	5.20	5.40	4.40	4.80	4.40	5.20	4.20	3.80	5.80
위원2	4.20	6.00	4.40	4.80	4.80	5.40	4.60	3.60	5.40
위원3	5.40	6.00	4.80	4.20	4.20	4.80	5.40	3.60	4.80
위원4	5.20	6.00	4.80	4.20	4.20	4.80	5.00	3.60	5.40
위원5	6.00	5.40	4.20	4.20	4.80	4.80	4.80	3.60	5.40
적용점수 (최고/최저 제외)	5.27	5.80	4.53	4.40	4.47	4.93	4.80	3.60	5.40
감 점	0	0	0	0.2	0	0	0.2	0.1	0
최종점수	5.27	5.80	4.53	4.20	4.47	4.93	4.60	3.50	5.40

면접평가 사유서

평가사유서	
위원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도시공사 발주의 부천대장 및 부천역곡 지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참여 기술인 면접평가를 함에 있어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여 기술인의 자질과 사고 발생 없는 사업 완수성 2. 참여 기술인이 사업을 대하는 태도와 사업에 대한 이해도 3. 사업수행 과정 중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중점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 방향 4. 통합건설사업관리의 특성을 감안한 현장운영 계획 등에 주안점을 두어 평가하였음 · 동 사업은 사업대상지 간의 거리가 있는 통합건설관리이며, 대상공종이 다수인 주택 지구 조성공사로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건설사업관리의 중요성이 높아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적합한 기술인을 선정하고자 하였음
위원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지역 현장 통합관리에 따른 감리단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홍수 시 예상 되는 피해 및 안전대책에 대한 사전 준비사항, 연락망 운영 등 세부적 관리방안 제시 ·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주요 쟁점 및 이해도가 높고, 사업수행시 건설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 대책에 대하여 차별화된 안전관리 방향성 제시 · 부지조성공사 특성을 고려한 풍부한 현장경험과 품질 및 환경 민원에 대한 예방대책 적극 노력
위원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발표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원활하지 못한 책임 건설기술인도 있었지만, 대체로 양호한 평가서 작성과 발표 및 질의응답을 해주었음 · 다만, 질의내용에 핵심적인 답변을 하였거나, 발표내용을 숙지한 후 잘 요약 발표한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에게 우수한 평가를 하였음
위원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전조사가 높았으며, 책임기술인의 경력과 자격 여부도 적정하였음 · 안전관리대책과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충분하였으나, 일부는 법 개정 내용을 미숙지하는 등 다소 아쉬운 모습(발표)이 있었음 · 사전 준비한 면접평가서와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변을 실수없이 추진한 컨소시엄 위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음 · 질문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해온 자료를 읽는 수준의 답변은 낮은 점수를 배점하였음
위원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자기소개서와 사업수행계획을 참고로 책임기술자는 통합사업관리의 능력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건설 자격사항, 경력, 질의응답을 통한 기술력과 관리능력을 평가하였음 · 안전분야 기술자는 통합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능력에 주안점을 두고, 건설참여 경력과 건설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하였음